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819
----------	-------

발의연월일 : 2026. 10. 7.

발 의 자 : 김남준 · 김준환 · 김정호
허중식 · 한준호 · 조계원
정준호 · 이학영 · 정성호
김병주 · 박용갑 · 윤후덕
송영길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텔레비전 방송, 영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K-콘텐츠의 핵심 장르인 콘서트 등의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화면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관객에게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영상콘텐츠와 달리, 공연콘텐츠는 아티스트와 관객이 동일한 공간에서 직접 대면하고 실시간으로 호흡·소통하며 유대감을 형성하는 독보적인 현장성과 즉흥성을 지니고 있음. 이러한 대면 소통의 특수성은 영상콘텐츠를 통해 확보된 글로벌 팬덤이 공연 현장으로 유입되고 다시 현장의 경험이 영상 및 음원 소비로 확장되는 등 K-콘텐츠 산업 전체의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핵심 동력임.

특히 초대형 K-POP 글로벌 투어 등은 수백억원대의 과감한 투자가 선행되는 고위험·고비용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대형 기획사가 주도하는 공연 투어는 무대·음향·조명 등 수많은 중소기업체와 프리랜서 스태프, 관광·지역 상권으로 연결됨에 따라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함.

이에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제공되는 예술적 관람물인 공연콘텐츠의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그 밖의 경우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자 함. 또한,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이 총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그 국내 발생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함으로써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고 문화콘텐츠 전반의 균형 잡힌 성장과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안 제25조의9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9(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제공하는 예술적 관람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공연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연콘텐츠가 처음으로 공연장에서 실연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5
 - 나. 그 밖의 경우: 100분의 10
2. 추가공제 금액: 국내에서 발생한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이 전체 공

연콘텐츠 제작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공연콘텐츠의 경우 그 국내 발생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5

나. 그 밖의 경우: 100분의 10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공연콘텐츠의 범위,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공연장에서 실연된 공연콘텐츠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5조의9(공연콘텐츠 제작비용</u> <u>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u> <u>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9</u> <u>년 12월 31일까지 「공연법」</u> <u>제2조제1호에 따라 실연에 의</u> <u>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제</u> <u>공하는 예술적 관람물로서 대</u> <u>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콘텐츠</u> <u>(이하 이 조에서 “공연콘텐츠”</u> <u>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u> <u>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u> <u>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u> <u>조에서 “공연콘텐츠 제작비용”</u> <u>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u> <u>다음 각 호에 따른 기본공제</u> <u>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u> <u>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u>바에 따라 해당 공연콘텐츠가</u> <u>처음으로 공연장에서 실연된</u> <u>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u> <u>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u> <u>법인세에서 공제한다.</u> 1.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공연콘

텐츠 제작비용의 다음 각 목
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상당
하는 금액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
의 15

나. 그 밖의 경우: 100분의 1
0

2. 추가공제 금액: 국내에서 발
생한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이
전체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공
연콘텐츠의 경우 그 국내 발
생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
율에 상당하는 금액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
의 15

나. 그 밖의 경우: 100분의 1
0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
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
야 한다.

③ 공연콘텐츠의 범위, 공연콘
텐츠 제작비용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